

현행	개정 (안)
<p>제9조(간사) ①(생략)</p> <p>②위원회의 간사는 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감사실 <u>조사계장</u>이 된다.</p> <p>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①위원회는 민원인과 민원사항과 관련된 <u>마포구</u> 소속국장 또는 과장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u>마포구</u> 소관의 서류를 열람, 조사할 수 있다.</p> <p>제11조(수당등) 위원회의 <u>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u>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9조(간사) ①(현행과 같음)</p> <p>②위원회의 간사는 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감사실 <u>민원관리계장</u>이 된다.</p> <p>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①위원회는 민원인과 민원사항과 관련된 <u>구</u> 소속국장 또는 과장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u>구</u> 소관의 서류를 열람, 조사할 수 있다.</p> <p>제11조(수당등) 위원회의 <u>회의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u>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4. 7. 6.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6. 28.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 일자 : 1994. 6. 30.
- 다. 상정 일자 : 제2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94. 7. 6)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세무1과장 문 영승)

가. 제출이유

-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에 의한 납세완납 및 미과세증명서 발급사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에 근거하여 각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납세의무자의 중복신고 의무사항을 생략하고, 과세권자의 직권미과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납세 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키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골자

- 납세완납증명서 및 미과세증명의 발급사무를 각동장에게 위임.(안, 제6조의2)
-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구청장이 비과세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는 직권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처리(안, 제15조, 제17조, 제29조제2항, 제33조)
- 취득세 신고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에 대한 과세대상 신고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불편해소(안, 제23조 내지 제26조, 제29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 건재)

-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 및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각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 면허세, 재산세등 지방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구청장이 비과세나 감면대상임을 알았을때는 직권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 취득세 신고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에 대한 과세대상 신고 절차를 생략하는등 납세자의 편익을 위한 개정으로 사료 됨.
-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제95조제1항 지방세법(1994. 1. 7.)제18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한 개정 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문(채운석 위원): 현재는 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고 동장도 발급할 수 있나?
- 답변(문엽승 세무1과장): 현재는 내부위임으로 구청장 명의로 동장이 발급하고 있으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동장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 위함입니다.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타사항: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1
----------	-----

제출일자: 1994. 6. 28.

제출자: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에 의한 납세완납 및 미과세증명서 발급사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에 근거하여 각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납세의무자의 중복신고 의무사항을 생략하고, 과세권자의 직권비과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납세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키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함.

2. 주요골자

- 납세완납증명서 및 미과세증명서의 발급 사무를 각동장에게 위임(안, 제6조의2)
-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구청장이 비과세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는 직권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처리(안, 제15조, 제17조, 제29조제2항, 제33조)
- 취득세 신고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에 대한 과세대상 신고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불편해소(안, 제23조 내지 제26조, 제29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제4741호) 제95조제1항
- 지방세법(1994. 1. 7 법률제4720호)제39조제1항, 제63조제1항 및 제184조 등
-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제19조 내지 제23조 등

○ 지방세법시행규칙(1993. 12. 31 내무부령제602호)제14조 등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필요성 : 불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구세의 세목”을 “서울특별시마포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중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구 사무의 내부위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7조제4항중 “15일”을 “14일”로 한다.

제15조중 “관할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

제17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이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제2항중 “설치연월일”을 “설치년월일”로 하고, 동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제목중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를 “(선박에 대한 신고의무)”로 하고, 동조 본문중 “연월일”을 “년월일”로 하며, 동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제1항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제2항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이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제2항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이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과세의 근거) <u>구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u></p>	<p>제1조(과세의 근거) <u>서울특별시마포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세목, .....</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 세무공무원 : <u>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u></p>	<p>제2조(정의).....</p> <p>1. 세무공무원 : <u>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u></p>
<p>2. (생략)</p>	<p>2. (현행과 같음)</p>
<p>제6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u>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중 납세의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구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u></p>	<p>제6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p> <p>.....(삭제)</p>
<p>(신설)</p>	<p>제6조의2(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사무의 위임) <u>구청장은 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u></p>
<p>제7조(납기한의 연장) ①~③(생략)</p> <p>④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u>15일</u>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⑤(생략)</p>	<p>제7조(납기한의 연장) ①~③(현행과 같음)</p> <p>④ .....</p> <p>.....14일.....</p> <p>.....</p> <p>⑤(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안)
<p>제15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비과세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u>관할구청장</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단서신설)</p> <p>1.~3.(생략)</p>	<p>제15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p> <p>.....</p> <p>.....</p> <p>.....</p> <p>.....<u>구청장</u>.....</p> <p>.....<u>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u>.....</p>
<p>제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4조,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u>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p> <p>1.~7.(생략)</p>	<p>제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p> <p>.....</p> <p>.....</p> <p>.....</p> <p>.....</p> <p>.....<u>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이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할 수 있다.</u>.....</p>
<p>제23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류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단서신설)</p>	<p>제23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p> <p>.....</p> <p>.....</p> <p>.....</p> <p>.....</p> <p>.....</p> <p>.....</p> <p>.....</p> <p>.....</p> <p>.....<u>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현행	개정 (안)
<p>1.~5.(생략)</p> <p>제2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단서신설)</u></p>	<p>1.~5.(현행과 같음)</p> <p>제2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p> <p>……</p> <p>……</p> <p>……</p> <p>……</p> <p>……</p> <p>……</p> <p>……</p> <p>……</p> <p>……<u>다만, 시조례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5.(생략)</p> <p>제29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단서신설)</u></p>	<p>1.~5.(현행과 같음)</p> <p>제29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①……</p> <p>……</p> <p>……</p> <p>……</p> <p>……</p> <p>……</p> <p>……</p> <p>……</p> <p>……</p> <p>……<u>다만, 시조례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3.(생략)</p> <p>②법 제234조의12 내지 제234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단서신설)</u></p>	<p>1.~3.(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u>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이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 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 (안)
<p>제32조(신고의무) ①(생략)</p>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신설)</p> <p>1.~7.(생략)</p> <p>제33조(비과세및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납기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단서신설)</p> <p>1.~6.(생략)</p>	<p>제32조(신고의무) ①(현행과 같음)</p> <p>②.....</p> <p>..... ..... .....<u>다만, 시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7.(현행과 같음)</p> <p>제33조(비과세및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p> <p>..... ..... ..... ..... ..... .....<u>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이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할 수 있다.</u></p> <p>1.~6.(현행과 같음)</p>